

논산을 새롭게  
시민을 행복하게

의안번호	제60호
------	------

논산시 수문 관리 조례안

제 출 자	건설도시국장
제출연월일	2023. 4. 11.

예산실장 심사필

# 논산시 수문 관리 조례안

의안 번호	제60호
----------	------

제출연월일 : 2023. 4. 11.  
제출자 : 논산시장  
제안설명자 : 건설과장

## 1. 제안이유

여름철 재해대책기간(5. 15. ~ 10. 15.)동안 농작물 침수 등의 재산 피해와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문감시원을 위촉하여 수문을 관리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함

##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 논산시 국가·지방하천 수문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도모

나. 감시원의 임무를 규정함(안 제4조)

: 수시 점검 및 보고, 역류 시 폐문 조치 등

다. 감시원의 근무기간과 수당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5조 ~ 제6조)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참조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참조

다.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기획감사실-3114(2023.3.28.)호]

2)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없음 [복지정책과-9442(2023.3.22.)호]

3) 규제심사 : 규제심사 대상 아님 [예산실-2919(2023.3.9.)호]

4)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3. 3. 9. ~ 2023. 3. 29.(20일간)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5) 비용추계서 : 붙임 참조

6) 충청남도 소관실과: 충청남도 하천과

## □ 조례안

논산시 조례 제 호

# 논산시 수문 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논산시 국가·지방하천 수문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감시원”이란 논산시 국가·지방하천의 수문을 조작 및 관리운영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감시원의 위촉) 수문 인근에 거주하는 자로서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

제4조(감시원의 임무) 감시원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수문을 작동하여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2. 수문 이상유무를 파악하고, 퇴적물 적치여부 등 작동이상이 있을 때는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3. 강우예보 시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하여야 하며, 하천수 역류 시 곧바로 폐문조치하여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제5조(감시원 근무기간) 여름철 재해대책기간(5.15.~10.15)으로 한다.

제6조(수당) ① 감시원 수당은 연1회 지급한다.

② 감시원 수당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련 : 300천원

2. 2련과 3련 : 330천원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성 명
입 안 자	건 설 과 장	홍 재 창
	하 천 관 리 팀 장	서 형 식
	담 당 자	이 길 복 (746-6447)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인명 및 재산 피해 최소화를 위해 수문감시원 위촉 및 수당 지급  
(안 제3조, 안 제6조)

**2. 비용추계결과****가. 추계의 전제**

- 비용추계 기간 : 2023년 ~ 2027년(5년간)
- 수문 조작 및 관리한 수문감시원에게 수당 지급

**나. 추계 결과**

- 세출 비용 : 9,840천원 [2023년 수문감시원 수당 기준]

구 분	산 출 기 초	금액(천원)
계		9,840
수문감시원 수당 (총 32개 수문)	- 1련 수문: 300천원 × 24개소 = 7,200천원 - 2련, 3련 수문: 330천원 × 8개소 = 2,640천원	9,840

※ 자원조달방안 : 시비

**3. 작성자**

건설과장 홍재창

## 〈연도별 비용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계
세 입	9,840	9,840	9,840	9,840	9,840	49,200
시 비	9,840	9,840	9,840	9,840	9,840	49,200
세 출	9,840	9,840	9,840	9,840	9,840	49,200
301-12 (기타보상금) 수문감시원 보상금	9,840	9,840	9,840	9,840	9,840	49,200
재원 조달	9,840	9,840	9,840	9,840	9,840	49,200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9,840	9,840	9,840	9,840	49,200
	지방세	9,840	9,840	9,840	9,840	49,200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